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민형배 · 복기왕
안도걸 · 안호영 · 이개호
이광희 · 이성윤 · 임오경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,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

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).

나.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(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).

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).

라.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).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”을 “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”로, “피해자나”를 “피해자등이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제4항에 따라”로, “사건처리”를 각각 “조사 및 사건처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건 처리”를 “조사 및 사건처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-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국가기관등에서

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(이하 “피해자등”이라 한다)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54조 중 “제31조의2제4항”을 “제31조의2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) <u><신 설></u>	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(이하 “피해자등”이라 한다)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제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

① (생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전보 등 적절한

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⑤ -----제4항-----

-----.

⑥ -----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-----
-----피해자등이나-----

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,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

-----.

-----.

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⑧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⑨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관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제4항에 따라-----
-----조사 및 사건처리-----
조사 및 사건처리-----
-----.
-----조사 및 사건처리-----

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⑥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4조(벌칙)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-. ⑩ 제4항-----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. 제54조(벌칙) ----- 제31조의2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